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4. 1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4월 4일
- 다. 상정 및 심사일자 : 제135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8. 4.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임 정 식

가. 제안이유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 등에 대한 조문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기업 모집 홍보시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추가함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골자

- (1) 입주기업 모집기준 명확히 규정 (제4조 제1항)
 - 입주대상 기업 모집기준을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 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개정하여 조문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 (2) 입주자 모집공고 (제4조 제2항)

- 입주자 모집공고를 “구보 및 일반신문”에서 “구보, 일반신문 또는 구홍페이지”로 변경하여 모집공고를 신속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

(3)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제6조 제8항)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건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의 제공과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의 모집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행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 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자를 공개모집시 구보 및 일반신문 등에 한하여 공고하였으나 구홍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동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